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3 선고 2022가단51468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박현진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3. 1. 9.
판 결 선 고 2023. 2. 13.

주 문

1.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 18.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61,179,90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1,179,9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9. 3. 22.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200,000,000원을 여신만료일 2022. 3. 21.로 하여 대여하는 약정을 체결한 다음 소외 회사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와 사이에 B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20. 3. 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50,000,000원을 여신만료일 2021. 3. 19.로 하여 대여하는 약정을 체결한 다음 소외 회사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고, B와 사이에 B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1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3) 2022. 4. 13. 기준으로 소외 회사가 위 각 대여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아래 이자 금액은 위 각 대여약정에서 정한 약정 이율 등을 적용한 금액이다).

(2022. 4. 13. 기준)

순번	여신과목	대출약정일	대출잔액	이자	총합계	B 연대보증액
1	중소기업 자금대출	2020. 3. 20.	49,428,587	3,629,393	53,057,980	60,000,000
2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9. 3. 22.	7,715,500	406,427	8,121,927	12,000,000
합 계			57,144,087	4,035,820	61,179,907	-

나. B와 피고의 이혼, 재산분할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 (1) B와 피고는 1993. 4.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관계였으나, 2021. 1. 18.경 협의이혼을 하였다.
- (2) B는 2021. 1. 18. 피고와 사이에 B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피담보채무인 B의 위 은행에 대한 채무는 피고가 부담하는 내용의 재산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3) B는 2021.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의 재산관계

B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위 가.항에 따른 채무,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9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것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라. B와 피고의 혼인관계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 (1) B는 1993. 4.경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다.
- (2) B는 2010.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는 주식회사 E에게 2010. 12. 24. 채권최고액 226,800,000원, 2015. 10. 23.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3) B는 2020. 9. 29. 주식회사 D에게 채권최고액 240,46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 (4) 피고는 2021. 7. 13. 주식회사 E에게 채권최고액 237,6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위 주식회사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 (5) B와 피고는 2021. 1. 18.경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 (6) B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425,000,000원 내지 490,000,000원이다.

(7) B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할 당시 피고에게는 별다른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F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2개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여 원고에 대하여 2022. 4. 13. 기준으로 합계 61,179,907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원고의 B에 대한 위 각 채권의 전제가 되는 대여약정과 연대보증약정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체결 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위 각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B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기는 내용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산분할로서의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법리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써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는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B와 피고의 혼인 기간 중 B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 점, ② 피고는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대부분을 피고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B는 피고와의 혼인 기간 중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여 왔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감사에 선임되어 소외 회사의 운영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B의 소외 회사 운영으로 생활비를 마련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B의 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 등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피고가 소외 회사 운영에 개입하였고,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생긴 수입 등으로 생활을 유지하였음에도 재산분할 당시 B의 채무를 모두 B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점, ⑤ B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할 정도의 유책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⑥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따르면, 협의이혼 당시의 B와 피고의 적극재산은 모두 피고가 가지는 반면, B는 대부분의 소극재산을 자신이 계속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의 목적으로 삼는 경우에는 최소한 피고와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비율로 소유하는 것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라고 보인다. 따라서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전부 넘기는 내용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위 재산분할로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한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425,000,000원 내지 490,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식회사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240,46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최소한 92,270,000원[= (425,000,000원 - 240,460,000원) × 1/2]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사해의사와 악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B의 사해의사와 B의 전처인 수익자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기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존재하던 주식회사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중 최소한 92,27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부분이고,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의 시가보다 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론종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위 92,270,000원보다 크다. 결국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61,179,90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1,179,9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영

별지